여성연구
The Women's Studies
2023. Vol. 117 No. 2 pp. 39~62
https://doi.org/10.33949/tws.2023.117.2.002

강압적 통제로서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대응 방향

김정혜*

초 록

스토킹은 대부분 남성이 여성에 대해 행하는 성별적인 행위이며 친밀성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스토킹을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스토킹처벌법은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성질과 친밀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제정되어 사건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모순과 허점을 남기고 있다. 이 논문은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강압적 통제로서의 성질과 다른 관계 유형의 스토킹에 비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이 갖는 특성을 살피고,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측면에서 스토킹 대응의 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강압적 통제는 여성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부정하고 고립시키며 자원 접근성을 제한하여 여성을 타인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악의적인 행동 과정을 수반하는 행위이다. 강압적 통제 이론에서 스토킹은 대인 관계라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생활을 침해하여 자율성을 통제하는 행동으로, 강압적 통제 이론은 젠더 권력 관계가 스토킹을 정상화하고 독려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스토킹에서 친밀성이라는 관계 특성은 독특한 가해와 피해를 만들어낸다.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은 당사자들이 형성해온 관계 이력의 맥락에서 발생하여 다른 유형의 스토킹과는 구분되는 위협과 공포를 가능하게 하며 피해자의 사적 정보와 취약점, 인적 관계를 스토커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스토킹 방법이 더욱 다양해지며 피해자의 대응은 어렵고 위험성은 높은 반면, 형사사법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서는 더 관대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을 구성하는 개별 사건들보다도 일련의 사건들의 패턴과 행위 과정, 당사자의 관계성과 성별 권력 관계의 맥락 속에서 강압적 통제로서의 행위의 성질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스토킹이 당사자 간의 공유되는 관계를 통해 제3자까지 확장되는 문제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친밀성의 맥락에서 피해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피해자 보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 요청되며, 이를 위하여, 수사, 재판, 피해자 지원 담당자의 교육, 판단 지침, 스토킹 관련 법률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스토킹,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강압적 통제, 친밀한 파트너 폭력,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wiccee@gmail.com)

I. 서 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한국 사회에서 스토킹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만 존재했다. 법은 미약했고 신고 건수도 많지 않았다. 법은 스토킹을 기껏해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로 취급했고, 스토킹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들이 폭행, 협박, 주거침입 같은 범죄에 해당될 때라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이었다. 각각의 행위들은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되어 경중이 판단되었으며, 여러 행위의 지속이나 반복이 야기하는 해악은 사건 처리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사이버스토킹만이 형사적 범죄로 분류되었지만 형량은 낮고 적용 사례도 거의 없었다.[1] 범칙금이나 형사처벌 외에 스토킹 행위를 통제할 조치도 부재하였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은 잘 보이지 않던 스토킹 사례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021년 3월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328건이었으나 법률이 공포된 4월에는 632건으로 증가했고, 법 시행 이후인 11월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한 3,14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경찰청, 2023.3.13.). 법률 제정에 뒤따른 스토킹 신고의 폭증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 스토킹 사건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스토킹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국가가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범죄 피해의 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스토킹 사건 처리 통계와 국내외의 실태조사 및 연구들은 스토킹이 성별화된 행위이며 친밀성의 맥락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임을 보여준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여러 스토킹 실태조사에서 스토킹 피해율은 공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여성가족부, 2016: 37;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3; Smith, Basile & Kresnow, 2022: 3;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2),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의 경찰 통계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중 80.8% 이상이 여성이고 피의자 중 81.3%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나(경찰청, 2022b: 150),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적 특성도 나타나는데, 여성긴급전화 1366의 2021년 스토킹 상담 통계에서는 86.6%가 아는 사람에 의해 스토킹을 경험하였으며, 스토커 중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2]의 비율은 전체 스토킹 상담의 45.7%에 해당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1) 사이버 스토킹 검거 건수는 2019년에 20건, 2020년 39건에 그쳤다(경찰청, 2021.10.27.)

2022: 10).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과거 연인이 스토커 중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20.3%, 장미혜 외, 2021: 146). 미국의 실태조사에서는 가해자 유형에서의 성별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친밀한 파트너가 가해자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43.4%)이었던 반면 남성은 친구, 이웃, 동료 등을 포함한 지인(44.2%)에 의한 피해가 훨씬 많았고 그 다음이 친밀한 파트너(32.4%)였다(Smith, Basile & Kresnow, 2022: 6-7). 이처럼 스토킹은 모르는 사이보다 아는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나 이별 후를 포함하여 친밀한 파트너 관계[3]의 맥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욱이 여성에 대한 스토킹에서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한 파트너는 가장 흔한 스토커 유형이다(이수정 외, 2021: 71; Logan & Walker, 2010: 440; Lyndon et al., 2012: 301; Spitzberg & Cupach, 2007: 70). 아는 관계,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스토킹이 더 많다는 것은 스토킹이 흔히 묘사되는 방식처럼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에 의한 집착'이 아니라 평범한 관계의 연장선 위에 있으며(Spitzberg & Cupach, 2007: 79)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에서도 친밀한 파트너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이 언론에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스토킹에 대한 전형적 이해는 스토킹을 정신질환과 관련된 위험한 개인의 행동으로 재현하고, 법, 정책적 대응은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을 기준으로 삼아 설계되었다. 스토킹의 동기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던 심리학 기반 연구들은 조현병, 양극성장애, 망상, 이상성욕,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과 관련지어 스토킹을 분류하고 스토커의 정신적 원인을 설명해왔다. 반면 친밀성의 맥락에서 자신을 거절한 상대방을 얻기 위한 애정 표현이나 지속적인 접근은 위험한 스토킹과는 구분되는, 개인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률안 발의와 국회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하다가 20년을 훌쩍 넘기고서야 비로소 제정되었지만, 법이 포괄하는 스토킹의 범위와 피해자 보호 조치의 영역은 상당히 좁아졌다. 법이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행위와 대상의 범위, 피해자 보호 조치의 종류가 피해자에 대한 도달

2) 상담 통계의 스토킹 가해자 유형 중 연인, 과거 연인, 연인 외 관계, 배우자, 과거 배우자, 배우자 외 관계를 말한다. '연인 외 관계'는 "사귀지는 않으나 데이트를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9-10).

3) 이 글에서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는 친밀성의 맥락에 있는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파트너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친밀성을 추구하는 관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과 접근 중심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은 '위험한 스토킹'을 통제하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되는데, 이는 곧 친밀성의 영역에 대한 개입 확대의 자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성질과 친밀성이 고려되지 않은 스토킹의 법적 모델과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불일치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건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모순과 허점을 남기고 있다.

국내에서 스토킹에 대한 연구는 202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법학, 경찰행정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전후하여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 법률의 한계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거나(고명수, 2023; 김영식·조수정, 2022; 김잔디, 2022; 김정혜·박보람·정다은, 2021; 송민진·박현정, 2021; 신상현, 2022; 이현정, 2021; 한동효·허영희, 2022 외 다수), 경찰의 대응 또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오상지, 2022; 이규호·김경동, 2022; 조민상, 2022; 한민경, 2021; 홍태경, 2022) 유형의 연구들이 많은 편이며, 그 외 분야에서 스토킹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연구가 행해진 것에 비해(김은영·윤민우, 2016; 박예은·곽대훈, 2022; 이건호·김은경·황지태, 2002; 이혜선·이수정·김범준, 2006; 조무용·김정인, 2016a; 조무용·김정인, 2016b), 스토킹 실태를 조사한 연구나(김은주·류영숙·이지원, 2021; 박철현·이상용·진수명, 2000; 이건호·김은경·황지태, 2002; 이수정 외, 2021), 스토킹의 특성을 조명한 연구(곽영길·임유석·송상욱, 2011; 이수정, 2022)는 상대적으로 적다. 선행연구에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은 스토킹의 유형 분류 중 피해자와 스토커의 관계에 따른 분류 방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관계 유형으로만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스토킹이 갖는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다. 스토킹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스토킹이 성별 권력 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며 어떤 의미를 갖는 행위인지, 친밀한 파트너 관계가 스토킹의 대상, 방법, 행위 수단, 대응, 보호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주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에 비해 한국보다 스토킹에 대한 입법과 학문적 관심이 다소 먼저 시작된 해외 각국에서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자 면접조사를 통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시도한 연구,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과 그 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을 비교, 분석한 연구,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강압적 통제 이론을 통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 등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서의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

어왔다. 외국의 경험적, 이론적 연구들은 스토킹이 범죄로서 처벌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난 한국의 상황에서 스토킹 관련 법과 정책, 실무에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성질을 반영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에 대한 외국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하여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강압적 통제로서의 성질과, 다른 관계 유형의 스토킹에 비하여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이 갖는 특성을 살피고,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강압적 통제로서의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스토킹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측면에서 접근되어 인격장애, 망상 등 정신병리적 문제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낯선 사람에 의한 병리적 스토킹'이라는 스토킹의 전형적 이미지의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스토킹이 언제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관련이 있더라도 스토킹의 발생과 지속에는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친다. 스토킹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다양하다. Parkhill, Nixon & McEwan(2022)에서는 스토킹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애착 이론, 진화 이론, 사회 학습 이론, 공격성의 정보 처리 모델, 강압적 통제 이론, 행동 이론, 관계적 목표 추구 이론 등을 소개하며, 다른 연구들은 그 외에도 스토킹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 일반적 심리학 이론이나 범죄 이론 등을 적용하고 있다.

Davis, Swan & Gambone(2012)에서는 성인 애착 이론과 관계적 목표 추구 이론을 통해 스토킹을 자기조절(self-regulation) 능력의 저하로 설명하면서 강압적 통제 이론을 통하여 스토킹의 성별 차이와 사회구조적 차원을 보완하는 통합 모델을 시도하였다. 성인 애착 이론에서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 신뢰할 수 있고 지지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신뢰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된다(Parkhill, Nixon & McEwan, 2022). 상대방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유형의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신체적, 심리적 폭력, 질투, 감시, 분노, 통제의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며(Davis, Swan & Gambone, 2012: 334-335), 이러한 성향은 대상에 대한 집착과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관계적 목표 추구 이론(Relational goal pursuit theory)은 스토커가 특정한 대상과 관계를 맺는

데 성공해야만 상위 목표인 행복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특정한 대상과의 관계라는 목표의 중요성을 과장한다고 본다(Spitzberg & Cupach, 2007: 79). 관계 목표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행복감을 얻는다는 고차원적 목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좀처럼 포기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생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관계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기가 부여되고(Spitzberg & Cupach, 2007: 78) 이는 스토킹 행동을 강화한다고 한다.

성인 애착 이론과 관계적 목표 추구 이론은 만족스러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근본적인 동기로 이해하고, 원하는 관계가 방해받을 때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스토킹의 원인을 이끌어낸다(Davis, Swan & Gambone, 2012: 335). 하지만 그 원인은 개인적인 차원을 다룬다. Davis, Swan & Gambone(2012: 335)에서는 두 이론 모두 자기 조절(self-regulation) 실패 모델을 사용하여 관계의 단절로 인한 분노, 불안, 질투, 슬픔 등의 감정 분출이 자기 조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하지만 스토킹의 성별 차이는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강압적 통제 이론을 가져와 성별에 따른 자원과 권력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스토킹의 이해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스토커의 심리학에서 스토킹은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인정을 욕망하는 행위이지만, 강압적 통제 이론에서 스토킹은 대인 관계의 형성, 유지라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의 생활을 침해하여 자율성을 통제하는 행동이다. Stark(2007)에서는 가정폭력을 특정한 폭력 행동들이 아니라 억압의 패턴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강압적 통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폭력 행동에 집중할 때에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나 치료 기간과 같은 요인들이 피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개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의 광범위하고 세밀한 통제의 연속, 권한과 자원의 박탈을 통해 삶을 총체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자율성을 침해하는 통제의 피해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진다. Stark(2007: 13, 15)는 강압적 통제를 '폭력 범죄가 아니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하면서, 여성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부정하고 고립시키며 자원 접근성을 제한하여 여성을 타인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악의적인 행동 과정을 수반하는 행위로 설명한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강압적 통제가 젠더기반폭력이 되는 배경을 제공한다.

Dutton & Goodman(2005: 746-747)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를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위협을 요구와 연결 짓는 역동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들의 연구를 인용한

Davis, Swan & Gambone(2012: 330-331)은 강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 감시, ②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위협을 동반한 요구, ③ 위협적 결과의 실행[4], ④ 요구 불응으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존재하지 않도록 대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통제, ⑤ 대상이 정상적인 사회적 지원의 원천에서 격리되도록 사회적 환경 조정과 같은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스토커의 감시, 접근, 위협, 피해자의 환경에 대한 통제 등이 강압적 통제 행동과 상당 부분 중첩되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의 영향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강압적 통제 이론을 스토킹의 설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강압적 통제에서 상대방에 대한 요구는 개념적으로 '자격'을 포함한다(Dutton & Goodman, 2005: 749). 자신이 상대방을 통제할 자격을 가지며 상대방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믿음에서 강압적 통제가 비롯됨을 의미한다. 이를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에 적용하면, 성차별적 사회에서 관계를 끝내거나 거부할 권한은 남성에게 있고 남성에게 속한 존재로서의 여성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는 믿음이, 이별을 원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스토킹을 정당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Brewster, 2003: 216).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남성의 스토킹 행동은 남성의 성별 권력이 지지되는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yndon et al., 2012: 302). 자신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얻어야만 한다는 남성의 욕구는 애착이나 관계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정당화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우위는 관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남성성의 정당화를 뒷받침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개인적 욕구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스토킹의 동기를 가질 수 있지만 주된 행동 방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행동이라도 사회적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 수용되고 그 영향 또한 같지 않다(Davis, Swan & Gambone, 2012: 332; Langhinrichsen-Rohling, 2012: 421).

성차별 인식과 스토킹 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성차별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스토킹 행동에 허용적이고 스토커에게 공감하며 스토킹을 사소화한다고 본다. 일례로 Miglietta & Maran(2017: 571)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자의 경우 스토커를 정서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반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과소평가하면서 피해자보다 스토커에게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성역할 기대, 성차별 인식과 스토킹 허용도의 관계를 밝힌

4) 위협적 결과는 반드시 실현될 필요는 없고,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조성하면 충분하다고 한다(Dutton & Goodman, 2005: 750).

연구들은 스토킹이 젠더기반폭력의 한 형태로 행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 구분된 사회 규범과 규범을 지탱하는 구조는 동일한 행동을 성별에 따라 금기시하거나 허용하도록 한다. 여성의 스토킹은 대개 남성보다 덜 심각한 수단을 사용하고,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서 남성의 공격적인 행동에 비해 여성은 더 수동적인 감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향한 여성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남성처럼 사회 문화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도 못한다(Reed et al., 2021: NP5578; Davis, Swan & Gambone, 2012: 332). 대부분의 스토커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는 이성애규범에서 남성이 행동하는 주체이고 여성이 대상이 되는 문법을 정확히 반영하는 현상이다. 보호자 남성과 보호 대상자 여성으로 설정된 이성애적 관계는 보호자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한다. 통제는 보호자의 권리이자 의무가 된다. 적극적이고 욕망을 표현하며 관계에서 주도적인 것을 긍정적이고 건강한 남성성의 발현으로 간주하는 반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대신 남성의 표현을 기다리고 유도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여성에게 기대하는 이성애규범적 서사는(Reed et al., 2021: NP5563; Cox, 2006: 56-57) 여성을 향한 남성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태도를 낭만화하고 정상화하며 피해를 사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로맨스의 영역으로 귀속시킨다(라롱드, 2022: 24-25; Becker, 2018: 7-8). 스토킹은 남성이 끈기 있는 시도로써 원하는 여성을 얻는다는 문화적으로 이상화된 서사의 극단이다. 집착을 낭만으로 해석하는 문화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치 증명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소화하고 스토킹이 맞는지 거듭 의심하게 함으로써(Lippman, 2018: 395-396) 스토킹을 강압적 통제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강압적 통제 이론은 젠더 권력 관계가 스토킹을 정상화하고 독려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록 강압적 통제 이론이 스토킹 중 일부 유형만을 설명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Parkhill, Nixon & McEwan, 2022), 스토킹은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 행위이다. Korkodeilou (2020: 95)에서는 스토킹이 "가해자의 정신병리(망상, 인격 장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상황적, 권력 역학(과거의 학대, 지식, 접근성,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 성별), 스토킹이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불평등,

5) 국내에서도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할수록 스토킹을 애정 사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 통념 허용도도 높게 나타난다거나(조무용·김정인, 2016b: 123-124),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스토킹 가해 가능성이 높다는(최태영, 2022: 45-51) 결론에 도달한 연구들이 있다.

여성 혐오, 젠더 규범 및 성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동기 부여되고 유발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애착 이론이나 관계적 목표 이론 등 다른 심리학 이론을 적용할 때에도 강압적 통제 이론은 스토킹의 원인을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는 한계를 넘어서 스토킹의 발생과 영향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성별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더구나 강압적 통제 이론의 설명력이 친밀한 파트너 관계나 파트너 폭력이 있었던 관계에만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스토킹 허용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듯, 친밀한 파트너 외의 관계이거나 친밀한 파트너 관계였지만 과거에 폭력이 없었던 사례에서조차 남성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성별 권력과 여성혐오적 문화는 남성에게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스토킹 행동을 할 권한을 부여한다.

Ⅲ.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은 스토킹 관계 유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여성이 피해자인 스토킹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서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속성을 갖는다. 친밀성이라는 관계 특성은 파트너 스토킹을 스토킹으로 해석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며 독특한 가해와 피해를 만들어낸다.

당사자들이 형성해온 관계 이력의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다른 관계에서의 스토킹과 구별되는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중요한 특성이다. 특히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이력은 당사자만이 포착할 수 있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위협을 가능하게 하고,[6] 과거의 폭력이 심각했을수록 피해자의 스토킹으로 인한 두려움은 강화된다고 한다(Logan & Walker, 2009: 249). 친밀성은 특정한 언행이나 물건, 특정한 시공간에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한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스토킹의 맥락에서 볼 때, 친밀한 관계에서 새롭게 획득된 의미는 명시적인 위협을 하지 않고도 피해자에게 공포를 야기할 수 있음을 뜻한다. 특정한 언행은 과거 경험의 맥락에서 의미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밀한 파트너 폭력 경험이 있는 관계에서는 가벼운 손동작이나 시선조차 폭력을 암시하고 상대방의 공포와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Logan et al., 2006: 25).

6) Logan & Walker(2009: 249)에서는 헤어진 연인을 따라다니던 남성이 멀리에서 주먹을 흔드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과거의 신체적 폭력을 상기시키는 위협적 행동이지만 제3자는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형사적 개입에서 이런 점이 포착되려면 스토킹에서 친밀성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친밀한 파트너가 상대방의 약점, 두려움, 비밀, 직장, 친구, 가족, 일상, 자주 머무는 장소 등의 사적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은 스토커에게 유리한 지형을 제공한다. 스토커는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더 자주 스토킹 행동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스토킹 방법을 고안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Logan & Walker, 2009: 249-250).

과거 또는 현재의 정서적 친밀성과 스토커가 피해자의 정보와 취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에도 영향을 끼친다. 낯선 사람의 스토킹에 비하여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거나 친밀한 파트너인 상대방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해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스토킹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연락을 단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자녀 등 피해자의 주변인과 스토커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혹은 있다고 느끼거나, 가족, 친구 등의 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스토커와 연락해야 하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며, 친밀한 파트너였거나 파트너인 스토커에게 갖는 연민과 걱정 등이 포함된 양가적 감정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동시에 스토커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는 관계를 거절해서 상대방을 자극했거나 경찰에 신고했거나 스토커의 연락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 행동 자체나 접근 금지 명령 위반 등에 도리어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러한 감정은 주변 사람, 스토커, 형사사법 담당자 등에 의해 촉진된다. 동시에 마치 가정폭력 사건에서와 같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자의 스토커에 대한 대응은 일관성이 없는 모호한 태도로 보일 수 있으며, 파트너 스토킹을 경시하는 태도와 결합하여 개입할 가치가 없거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스토커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나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스토커의 주변 사람들을 스토킹에 활용할 수 있다.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 여성 62명을 심층면접한 Logan et al.(2006: 34-35)의 연구에서는 스토킹에 스토커 외의 제3자가 개입된 사례가 면접참여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커나 피해자의 친구(52%), 스토커나 피해자의 친척(39%), 자녀(3%), 스토커의 친밀한 파트너(3%) 등이 피해자를 감시하거나(84%) 숨어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거나 속여서 피해자가 스토커와 대화하거나

만나도록 유도하는(10%)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을 도왔다. 제3자는 의도적으로 스토커의 편에서 스토킹에 가담할 수도 있지만, 예컨대 어머니의 일정을 의심 없이 아버지인 스토커에게 말하는 자녀처럼, 스토커와의 관계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를 감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감정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에게로 스토킹이 확장될 수 있다. 피해자와 스토커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안전이나 양육권 등의 위협이 스토킹 수단이 되는 식이다(Brewster, 2003: 215; Logan & Walker, 2009: 250). 제3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때로는 명시적으로 표현될 필요조차 없는데, 스토커에 대해 불안감, 공포심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스토커가 그들의 자녀나 반려동물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위해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 행위가 제3자에게로 확대되면 피해자는 더 많은 사람을 경계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이 높아지고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도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Melton, 2007: 360-361). 반면 스토킹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주된 스토커처럼 고의적이지 않거나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 스토킹의 대상이 된 제3자는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 제3자가 개입된 스토킹이 스토킹으로 판단되고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다. 스토킹행위의 협소한 법적 정의도 제3자가 연루된 스토킹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인지하도록 한다.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은 스토커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협박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고, 파트너 관계에서 이미 많은 경계가 허물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기가 더 쉬우며 잠재적으로 더욱 위협적이고 재범률도 더 높다고 한다(Logan & Walker, 2009: 250-251, 253). 이는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이 더 위험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Rosenfeld(2004: 23-25)는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와 스토킹 관련 폭력의 연관성을 연구한 문헌들의 메타 분석 결과,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기관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스토커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집단에서 신체적 폭력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7] 또한 Sheridan & Roberts(2011: 259-260)에서는 스토커가 과거 친밀한 파트너였는지 여부가 신체적 폭력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스토커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이면서 파트너 폭력이 있었다는 점이 스토커의 신체적 폭력의

7) 스토커가 전 연인인 경우는 45%가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었던 반면, 낯선 사람인 경우는 33%, 전 지인인 경우는 14%만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Sheridan & Davies, 2001: 109).

유의미한 예측 인자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 유의할 점은 스토킹에 신체적, 성적 폭력 등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스토킹 그 자체로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해악이 된다는 것이다. 스토킹에 수반되는 위협이나 폭력, 살인과 같이 심각한 폭력으로 확장되는 스토킹을 강조하는 것은 스토킹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폭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의 사전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스토킹이 신체적 폭력으로 확대될 잠재력을 갖는다고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스토킹이 대부분 신체적 폭력으로 확대된다는 인식은 스토킹을 사소화하는 태도와 스토킹이 '통제 불가능한 정신질환자의 행동'이라는 전형과 결합함으로써, '스토킹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위험해야 스토킹'이라는 인식에 기여한다. 정서적 폭력이나 통제의 해악을 경시하고 신체적인 폭력을 가장 중대한 폭력으로 보는 경향이 더해져, 어떤 스토킹이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았거나 신체적 폭력으로 확대될 것 같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고 개입 필요성도 낮다고 판단하도록 한다. 특히 친밀성의 맥락에서는 관계를 얻거나 회복하는 것이 스토커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폭력 가능성과 위험성은 낮게 판단되고 개입은 자제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 파트너의 지속적인 접근과 통제는 사회문화적으로 허용되고 폭력에도 관용적인 태도가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폭력은 좀처럼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즉, 친밀성과 관련된 스토킹에서 신체적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스토킹을 연결하여 강조하는 방식은 도리어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을 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다양한 상황의 스토킹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개입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 전형에 부합하지 않는 경험을 하는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스토킹으로 해석하고(Korkodeilou, 2020: 155) 대응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스토킹이 대체로 위험성은 더 높지만, 전형적 스토킹과 동떨어져 있어 다른 관계에서의 스토킹보다 스토킹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낮고 사회적 수용가능성은 높은 경향으로 인하여(Becker, 2018: 24) 형사사법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서 그에 부합하는 대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을 전제로 구성된 스토킹의 정의와 대응은 접근을 스토킹범죄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접근 통제를 중심으로 스토킹을 해결하고자 한다.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에 대한 연구들도 관계의 시작을 거절당했거나 이별한 이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스토커의 스토킹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도중에도 스토킹은

시작된다(Logan et al., 2006: 6-7; Melton, 2007: 355). Logan et al. (2006: 25)에서는 스토킹에서 '근접성' 개념이, 심리적,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피해자와 스토커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구하고자 하는 모델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의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 모델에서는 이미 '근접한' 관계에서 어떻게 스토킹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고, 접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 정책은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자의 필요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 지원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사건의 처리와 처벌에서도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은 더 관대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Sheridan & Davies(2001)에서는 스토커가 과거 파트너 관계일 때 신체적 폭력을 가장 많이 행사했지만 유죄 판결은 낯선 사람인 스토커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폭력을 행사한 낯선 사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한 과거 파트너였다(Sheridan & Davies, 2001: 114).[8] 이성애 연애의 성별 규범하에서 여성에게 거절당한 남성에 대한 동정과 연민, 정신적 폭력에 비해 신체적 폭력의 위험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태도, 정서적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인 수용,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지속되는 정서적 폭력에 대한 경시와 정상화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을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거나 아예 스토킹으로 분류하지 않는 태도를 유발하고(Korkodeilou, 2020: 151-156), 이는 피해자의 보호와 스토커에 대한 적절한 형사사법적 대응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Ⅳ.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대응을 위한 법, 정책 개선 방안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이 가정폭력을 사건별 범죄로 구분하고 폭력 행위와 동일시함으로써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을 "세분화, 사소화, 정상화, 비가시화"

8) 국내의 연구에서도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가 경찰의 대응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 한민경(2021: 52-53)에서는 스토킹 신고에 대하여 경찰이 현장조치와 같은 비형사적 방식으로 처리할지 계속조사, 임의동행, 즉결심판, 체포, 통고처분 등 형사적인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토커와 피해자가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 배우자, 동거인,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파트너 관계일 때, 그 외의 관계에 비하여 경찰이 형사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할 가능성이 0.64~0.71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한민경, 2021: 56).

한다는 Stark(2009: 1510)의 비판은 스토킹에 대한 개입에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다. 스토킹은 일련의 사건들의 패턴과 행위 과정, 당사자 간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젠더 권력의 지지를 받는 강압적 통제로서의 행위의 성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위협 등은 당사자 간의 관계 이력과 맥락,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속성, 행위자의 태도, 다른 여타의 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라야 비로소 스토킹으로서의 의미와 강압적 통제로서의 속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은 당사자들의 관계 이력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맥락과 제3자가 개입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피해자 지원자의 교육과 스토킹 관련 지침에서는 스토킹 여부의 판단과 위험성 평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의 선택에 있어 법률상 규정된 특정 행위가 발생했는지, 그 행위가 얼마나 위협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확인을 넘어서,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성과 스토킹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의 스토킹 정의 규정 개정은 스토킹의 이해를 확장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하기,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물건 보내기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 5가지를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스토킹행위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에서조차 그와 같은 제한적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법률에 열거된 행위 외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스토킹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정보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좁힐 뿐 아니라 인정된 피해자에 대해서조차 스토킹을 구성하는 사건들과 상황의 맥락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주변인이나 반려동물을 스토킹에 이용하거나, 비밀번호, 온오프라인에서의 생활 패턴처럼 친밀성으로 인하여 알고 있거나 알아낼 수 있는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시, 추적하는 등 더욱 다양한 행위 수단들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5가지 행위 이외의 수단들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며, 처벌법의 개정 전이라도 피해자 지원에서는 스토킹의 더 종합적인 정의를 통해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법의 개정 및 여성가족부 지침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명수, 2023: 112; 김영식·조수정, 2022: 48-49; 김정혜·박보람·정다은, 2021: 160-161, 170-172).

제3자가 스토킹에 이용되는 상황 또한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이다.

스토커는 자신과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스토킹에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를 감시,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변인을 스토킹의 대상에 포함시켜 제3자의 안전까지도 피해자의 책임으로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스토커가 제3자를 이용할 수 있으면, 스토커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기간이나 심지어는 징역형이 집행되는 동안에도 스토킹은 지속가능하다(Melton, 2007: 357). 제3자에 의한 행위 또는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각기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법적 규율 범위 내에 포함되겠지만, 제3자가 주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외의 사람이거나 제3자에 대한 행위에 지속성이나 반복성, 불안감, 공포심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스토커가 이용한 제3자가 스토킹이라는 인식이 없는 등의 상황에서는 제3자의 행위가 별도의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김잔디, 2015: 225; 김정혜·박보람·정다은, 2021: 32-33). 설령 별도의 스토킹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의 스토킹과는 다르게 이해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주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게 되며, 전체로서 종합되지 못한 별개의 사건으로서의 스토킹은 경미하게 처리되기 쉽다. 피해자의 경험에서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과 제3의 대상에 대한 스토킹까지도 통합적인 스토킹의 범주 내에 포함되어 금지되어야 하고 본인 외의 스토킹의 대상에 대한 보호, 지원도 필요하지만 법률상 스토킹의 정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는 스토커와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껏해야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만을 포함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이 제3자까지 확장되는 문제를 스토킹처벌법이 포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의 범위를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스토킹 사건의 처리와 재판, 피해자 지원에서도 제3자가 이용되는 양태를 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사건 처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표준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사례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업무 내용, 지원자 교육훈련, 예산 배분 등을 기획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스토커의 관계, 스토커의 특성, 스토킹의 동기 등 스토킹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중에서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은 스토커와의 친밀성이 어떤 양상인지, 당사자 간의 성별을 비롯한 권력 관계는 어떠한 형태인지, 스토커에 대한 피해자의 정서적 의존 또는 경제적 의존의 정도는 어떠한지, 스토킹 이외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있거나 있었는지, 피해자와 스토커가 생활상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자녀 등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제3자와의 관계나 책임을 주로 누가 지고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나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피해자의 대응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등 각각의 관계가 갖는 특성에 따라 스토킹의 발생 형태와 향후 지속가능성,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효과적인 대응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중 하나로서의 안전 계획 수립은 스토커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사, 이직, 휴학, 모임 참석이나 운동 등 외부 활동 중단, 외출 최소화, 연락처 변경 또는 차단, 계정 정지 또는 삭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하지만, 대비책들은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일상을 흔들고 사회적 고립감과 무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반면 언제나 효과적이지는 않다(Langhinrichsen-Rohling, 2012: 423; Cox, 2006: 65-66). 따라서 피해자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을 파악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지원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피해자는 스토커에게 거부 의사를 표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단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고 소통을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Lippman, 2018: 397). 지속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패턴보다 특정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에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연락을 '수락'하는 상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아니므로 스토킹이나 접근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금지하는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스토커와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접근 금지가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일시적으로만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데 불과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스토킹은 끝났고 이제 관계의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다거나 피해자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하게 되면 이후의 사건 처리나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행법하에서는 접근 금지 외에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도 없다.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를 높여야 하며, 접근 금지 외에도 스토킹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두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스토킹 사건의 상당수가 공소권없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고 있는데,[9]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도록 하는 규정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처벌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생각된다.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피해자의 권한이 아니라 가해자를 처벌 받지 않도록 할 피해자의 책임이자 의무로 변질되기 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스토킹의 처벌이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사적이고 사소한 문제라는 전제를 반영하는 것이며, 처벌 불원 의사를 얻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함으로써 스토킹을 이어갈 명분을 스토커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처벌의 부담과 책임을 돌리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김정혜, 2021: 14; 송민진·박현정, 2021: 158; 홍태경, 2022: 319).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에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스토킹행위의 정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의 관계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9) 2021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불기소된 인원은 경찰 사건 처리 인원 총 818명 중 239명, 검찰 사건 처리 인원 797명 중 64명이었다(경찰청, 2022a: 364-365; 대검찰청, 2022: 232-233). 경찰과 검찰의 공소권없음 불송치 및 불기소 사건을 합산하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해 스토킹 피의자의 38.0%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다.

■ 투고일 : 2023년 4월 27일 ■ 심사일 : 2023년 6월 6일 ■ 수정일 : 2023년 6월 9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6월 14일

참고문헌

경찰청(2021.10.27.). “경찰청_연도별 사이버 범죄 통계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53887/fileData.do에서 2023.4.20. 인출.

_____(2022a). **2021 범죄통계**.

_____(2022b).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_____(2023.3.13.). “2021년 월별 전국 스토킹 112신고 건수”.

고명수(2023). “스토킹행위 규율입법 개선연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입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95-118.

곽영길·임유석·송상욱(2011). “스토킹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호. 47-76.

김영식·조수정(2022). “스토킹(Stalking)범죄의 행위유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27-54.

김은영·윤민우(2016). “스토킹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55-81.

김은주·류영숙·이지원(2021).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방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잔디(2015).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49호. 200-238.

_____(2022).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반복’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1호. 45-70.

김정혜(2021). “스토킹 피해자의 생활상 평온 확보를 위한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치안정책리뷰**. 제73호. 13-16.

김정혜·박보람·정다은(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검찰청(2022). **2022 범죄분석**.

라롱드, 줄리 S.(2022). “스토킹, 그 죽음의 위협: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다”. 최선화 정리. **여성과 인권**. 제27호. 22-27.

박예은·곽대훈(2022). “세대 차이에 따른 스토킹 인식 분석: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8권 제3호. 49-64.

박철현·이상용·진수명(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송민진·박현정(2021). “스토킹의 현주소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141-170.

신상현(2022).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근 개정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저스티스**. 제188호. 175-208.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상지(2022).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22권 제3호. 5-40.

이건호·김은경·황지태(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규호·김경동(2022). “스토킹범죄와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사법행정**. 제63권 제4호. 39-48.

이수정(2022). “가스라이팅 및 스토킹의 심리적 기재에 관한 비교”.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2호. 211-236.

이수정·강지은·김성현·차유나·김승혜·박지혜·박경선·김리원·서혜란·신애리·정혜정·박성원·배지현·김정동·민지윤·이정민(2021).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현정(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4호. 265-284.

이혜선·이수정·김범준(2006).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363-396.

장미혜·김효정·정연주·박상민·정다은·정지연·유경희·이다은(202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조무용·김정인(2016a). “대학생들의 스토킹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지각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3호. 341-364.

조무용·김정인(2016b).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1권 제1호. 109-134.

조민상(2022).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73-288.

최태영(2022). **성 역할 고정관념과 왜곡된 성문화 인식이 스토킹 행위에 미치는 영향: 스토킹 허용도의 매개 효과**.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2021 여성폭력 초기지원 현황보고서**.

한동효·허영희(2022).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225-256.

한민경(2021).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 **형사정책**. 제33권 제1호. 39-65.

홍태경(2022). “스토킹범죄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어려움: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307-332.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23, March 15). Personal Safety, Australia: Rates of physical and sexual assault,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economic and emotional abuse, stalking, sexual harassment, and childhood abuse.

Becker, A.(2018). *Where Romance Meets Stalking: How Heteronormative Gender Beliefs Perpetuate Stalking Culture*. Doctoral dissertation.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Brewster, M. P.(2003). Power and Control Dynamics in Prestalking and Stalking Situation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 207-217.

Cox, L. J.(2006). *Stalking: A Qualitative Study of Women's Lived Experiences*.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Davis, K. E., Swan, S. C. & Gambone, L. J.(2012). Why Doesn't He Just Leave Me Alone? Persistent Pursuit: A Critical Review of Theories and Evidence. *Sex Roles*, 66(5-6), 328-339.

Dutton, M. A. & Goodman, L. A.(2005). Coercion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Sex Roles*, 52(11-12), 743-756.

Korkodeilou, J.(2020). *Victims of Stalking: Case Studies in Invisible Harms*. Palgrave Macmillan.

Langhinrichsen-Rohling, J.(2012). Gender and Stalking: Current Inters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Sex Roles*, 66(5-6), 418-426.

Lippman, J. R.(2018). I did it because I never stopped loving you: The effects of media portrayals of persistent pursuit on beliefs about stalking. *Communication Research*, 45(3), 394-421.

Logan, T. K. & Walker, R.(2009). Partner stalking: psychological dominance or “business as usual”? *Trauma, Violence & Abuse*, 10(3), 247-270.

Logan, T. K. & Walker, R.(2010). Towar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harms caused by partner stalking. *Violence and Victims*, 25(4), 440-455.

Logan, T. K., Cole, J., Shannon, L. & Walker, R.(2006). *Partner stalking: How women respond, cope, and surviv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yndon, A. E., Sinclair, H. C., MacArthur, J., Fay, B., Ratajack, E., & Collier, K. E.(2012). An introduction to issues of gender in stalking research. *Sex Roles*, 66(5-6), 299-310.

Melton, H. C.(2007). Stalking in the Context of Intimate Partner Abuse: In the Victims' Words. *Feminist Criminology*, 2(4), 347-363.

Miglietta, A. & Maran, D. A.(2017). Gender, Sexism and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Stalking: What Makes the Difference?. *Psychology of Violence*, 7(4), 563-573.

Parkhill, A. J., Nixon, M. & McEwan, T. E.(2022). A critical analysis of stalking theory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40(5), 562-583.

Reed, L. A., Ward, L. M., Tolman, R. M., Lippman, J. R. & Seabrook, R. C.(2021). The Association Between Stereotypical Gender and Dating Beliefs and Digital Dating Abuse Perpetration in Adolescent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9-10), NP5561-NP5585.

Rosenfeld, B.(2004). Violence Risk Factors in Stalking and Obsessional Harass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1), 9-36.

Sheridan, L. & Davies, G. M.(2001). Violence and the prior victim-stalker relationship.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11(2), 102-116.

Sheridan, L. & Roberts, K.(2011). Key questions to consider in stalking case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9(2), 255-270.

Smith, S. G., Basile, K. C. & Kresnow, M.(2022).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2016/2017 Report on Stalking - Updated Release.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pitzberg, B. H. & Cupach, W. R.(2007). The state of the art of stalking: Taking stock of the emerging literature.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12(1), 64-86.

Stark, E.(2007).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Stark, E.(2009). Rethinking Coercive Control. *Violence Against Women*, 15(12), 1509-1525.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2, November 25). Stalking: Findings from the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CSEW) year ending March 2022.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Response to Intimate Partner Stalking as Coercive Control

Jeonghye Kim*

Stalking is mostly a gendered behavior perpetrated by men against women and often occurs in the context of intimacy. As such,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talking in the contex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as a gender-based violence. However, stalking law has been enacted without reflecting gender and intimacy, leaving contradictions and flaws in case response and victim protection. This paper analyzes foreign studies on intimate partner stalking to examine the nature of intimate partner stalking as coercive control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imate partner stalking compared to stalking in other relationship types,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laws and policies in response to intimate partner stalking.

Coercive control as a gender-based violence involves a malicious course of action that violates women's bodily integrity, denies them autonomy, isolates them, limits their access to resources, and subordinates them to the will of others. In coercive control theory, stalking is an act of controlling autonomy by invading another person's life to satisfy one's own needs for interpersonal connection, and coercive control theory helps us understand how gendered power relations normalize and encourage stalking.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characteristic of intimacy in stalking creates unique perpetration and harm. Intimate partner stalking occurs in the context of the parties' relationship history, which enables threats and fears that are distinct from other types of stalking; the victim's private information, vulnerabilities, and relationships are more readily available to the stalker, resulting in a greater variety of stalking methods, the victim's response is more difficult and the risk of stalking is higher and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and victim protection are likely to be more lenient.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o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of intimate partner stalking,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and respond to the pattern and course of conduct of a series of events rather than the individual incidents that constitute stalking, the nature of the behavior as coercive control within the context of the parties' relationship and gender power relations, and the extension of stalking to third parties through the shared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t is also called for to ensure that victim protection and assistance is tailored to the victim's situation in the context of intimacy. To this end,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judges, and victim support workers, judgmental guidelines, and stalking laws should be developed.

Keywords : stalking, intimate partner stalking, coercive control, intimate partner violence, dating violence